

	보도자료	
	11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인터넷, 18일(화) 14:00 부터]	

작성부서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		
책 임 자	홍양희 부장(02-2262-6665)	담 당 자	안태민 팀장(02-2262-6684)
배포일자	2025년 11월 18일(화)	배포부서	홍보부(02-2262-6605) 총 8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자산 활용도 제고에 기여

- 8영업일 동안 생명보험 5개사를 통해 총 605건 접수
- 총 28.9억원(초년도지급액), 1건당 평균 477만원(月환산 39.8만원) 지급
-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89.2%^{평균}), 지급기간을 짧게(7.9년^{평균})해 제도 활용도 높여
- 국민연금(月평균 67.9만원)의 보완적 수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성 제고 기대

지난 10월 말 생명보험 5개사*가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일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소비자의 자산 운용 선택폭을 넓히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 10월 30일 출시 생보사 :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보험모집 설계사 등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며,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신청만 가능**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지급기간 및 유동화 비율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 (단, '유동화 지급금 총액 > 납입보험료 총액' 요건 충족 필요)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첨부1 참조

【 제도 도입 취지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유동화(자동감액*)하여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 기능을 일부 조정하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 감액이란, 보장금액(가입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납입을 중단하는 제도로, 그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

또한, 과거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아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종신보험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잊혀진 자산’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높은 대출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운용에 제약이 있던 과거 고금리 계약자들에게 자산 운용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와 보험계약대출 비교>

구분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계약 대출
장점	· 추가적인 이자 부담 없음 · 수령금액에 대한 상환의무 없음	· 언제든지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상환 가능
단점	·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불가	· 추가적인 이자 부담 있음 · 상환의무 발생으로, 원리금 미상환시 사망보험금 감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3.12) 세부내용 참조

【 운영 현황 】

지난 10월 30일 제도 도입 이후 8영업일 동안(10.30~11.10) 생명보험 5개사를 통해 605건이 신청·접수되었다.

신청·접수된 605건을 분석한 결과, 8영업일 동안 약 28.9억원(5개사 합산 초년도지급액)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1건당 평균 477만원(月환산 39.8만원) 수준이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의 평균은 각각 약 89.2%와 약 7.9년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운영 실적 통계 및 분포

- 접수회사 : 생보 5개사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 신청기간 : 2025.10.30 ~ 11.10 (8영업일)
- 신청건수 : 605건
- 유동화 신청 내역

총신청건수	신청연령 ^{평균}	유동화 비율 ^{평균}	유동화 기간 ^{평균}	초년도 지급액 ^{총액}	1건당 평균 ¹⁾ (年)
					1건당 평균 ²⁾ (月)
605건	65.6세	89.2%	7.9년	28.9억원	477만원
					39.8만원

1) 1건당 평균(年) = 초년도 지급액(총액) / 유동화 신청계약 건수

2) 1건당 평균(月) = 1건당 평균(年) / 12개월

- 유동화 신청계약의 ‘신청 연령’ 분포

총신청건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연령(만 55세부터 신청 가능)				
	55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75세 미만	75세 이상
605건	75건	174건	220건	100건	36건

- 유동화 신청계약의 ‘초년도 지급액’ 분포

총신청건수	초년도지급액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605건	58건	374건	108건	65건

한편, 우리나라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약 月 192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개인

연금** 및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하고, 필요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또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적정생활비(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국민연금연구원)

구분	개인기준	부부기준
최소생활비	136만원	217만원
적정생활비	192만원	297만원

** 연금저축(세제적격) 계약당 평균 연금수령액 : 月 24.6만원(年 295만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신청자의 1인당 환산 月평균 지급액은 약 39.8만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月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할 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연금의 보완재로서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1인당 월평균 수급액 : 67.9만원 (2025년 7월 국민연금 공표통계)

【 실제 활용사례 】

① A씨(60대)는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유동화 신청

- A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가입금액(사망보험금)은 3,000만원 수준으로 A씨는 90%의 유동화 비율, 지급기간은 5년으로 비교적 짧게 선택 하는 방식으로 노후자금 확보

A씨(60대) 실제 활용사례

가입연령	가입시기	보험가입금액	예정이율	총납입보험료
40대	2000년대 초반	3,000만원 수준	6.5%	약 912만원

- 유동화 비율 90%, 유동화 지급기간 5년 신청

→ 초년도 지급액 244.6만원, 5년간 총 1,314만원 수령
(年평균 262.8만원 / 月평균 21.9만원)

② B씨(60대)는 1990년대 후반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유동화 신청

- B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가입금액(사망보험금)은 7,000만원 수준으로 B씨는 90%의 유동화 비율, 지급기간은 7년으로 비교적 짧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年지급액을 높임

B씨(60대) 실제 활용사례

가입연령	가입시기	보험가입금액	예정이율	총납입보험료
40대	1990년대 후반	7,000만원 수준	8.5%	약 2,770만원

- 유동화 비율 90%, 유동화 지급기간 7년 신청
→ 초년도 지급액 446만원, 7년간 총 3,436만원 수령
(年평균 490.8만원 / 月평균 40.9만원)

③ C씨(70대)는 1990년대 중반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유동화 신청

- C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가입금액(사망보험금)은 5,000만원 수준으로, C씨는 90%의 유동화 비율로 지급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여 年지급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지만, 장기 수령을 선택

C씨(70대) 실제 활용사례

가입연령	가입시기	보험가입금액	예정이율	총납입보험료
40대	1990년대 중반	5,000만원 수준	7.5%	약 2,140만원

- 유동화 비율 90%, 유동화 지급기간 20년 신청
→ 초년도 지급액 131.6만원, 20년간 총 3,249만원 수령
(年평균 162.5만원 / 月평균 13.5만원)

[향후계획]

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의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운영과정 상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적 개선(비대면 신청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종신보험 신규 가입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협회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소비자 체감형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요건

신청자격	신청시점 만 55세 이상 계약자(소득, 재산요건 X)
대상계약* [^{1)~4)} 모두 충족]	¹⁾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²⁾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³⁾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⁴⁾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불가) $\text{유동화 비율} = \frac{\text{감액된 사망보험금}}{\text{사망보험금}}$
납입보험료 초과 지급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

- ☐ **(대상계약)** ¹⁾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담보로서, ²⁾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되었으며, ³⁾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⁴⁾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 ☐ **(신청자격)** 신청시점에 만 55세 이상 계약자 (소득, 재산요건 X)
- ☐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
 -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불가
- ☐ **(기납입보험료 초과 설정)**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
 - * 유동화 지급 총액이 기납입보험료에 미달하는 유동화 조건(유동화 비율 등) 설정 불가
- ☐ **(유동화 기간)** 계약자가 연단위로 설정 가능(최소 2년 이상)
- ☐ **(신청비용)** 유동화 신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비용 없음 (無 사업비)

- **(대상계약자 개별 안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정기적인 제도 안내(문자 또는 카카오톡) 시행
- **(유동화 지원 담당자 운영)** 충분한 제도 안내 및 계약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회사별 지원·안내(콜센터) 담당자 운영 및 해피콜 실시
 - 철회 가능 기간 중 해피콜을 시행하여 계약자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 철회처리 또는 보완설명 실시
- **(비교안내)**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유지 및 사망보험금 유동화시 수령액을 비교하고 중요내용 설명 및 자필서명
- **(철회 및 취소)**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보장
 -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 가능
 -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 미이행시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부활 청구)** 부당한 사유로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된 경우에는 보험업법 상 부활청구권* 보장
 - * 부활청구권(보험업법 §97④) :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 소멸일부 6개월 이내에 소멸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신규계약 취소 가능
- **(수익자 통지)** 유동화 신청 시 계약자(신청자) 동의 하에 기명 보험 사망수익자에게 유동화 신청 사실 통지